

[별표 5] <개정 2004.7.23.>

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(제24조제1항관련)

보 고 사 항	보고받는자	서 식	보고기한
1. 석유정제업자			
가. 석유수급상황기록부·수출입 상황기록부 및 원유수입실 적	공사	별지 제21호서식·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 식	매월 15일
나. 용제수급상황기록부(용제 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 자에 한한다)	검사소	별지 제24호서식	매월 15일
2. 석유수출입업자(법 제8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석유수출입업자에 한한다)			
가. 석유수급상황기록부 및 석 유수출입상황기록부	공사	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 식	매월 15일
나. 용제수급상황기록부(용제 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 업자에 한한다)	검사소	별지 제24호서식	매월 15일
3. 석유판매업자			
가.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 자 : 거래상황기록부(일반 대리점용)	법인	별지 제26호서식	매월 15일
나.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 : 거래상황기록부(주유소용)	법인	별지 제27호서식	매월 15일
다. 월간 20킬로리터이상의 석 유제품을 판매하는 일반판 매소인 석유판매업자 : 거 래상황기록부	법인	별지 제27호의2서 식	매월 15일
라. 용제판매업자 : 용제판매업 자별(대리점, 판매소) 수요 자 거래상황	검사소	별지 제28호서식	매월 15일
마. 가목 내지 다목의 보고에 대한 법인의 종합보고	시·도지사 및 공사	—	석 유 판 매 업 자 의 보고를 받 은 날부터 5일 이내
바.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 자			
(1) 석유수급상황기록부 및 수출입상황기록부	공사	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	매월 15일

(2) 용제수급상황기록부 사. 부생연료유평매소인 석유 판매업자 : 거래상황기록 부	검사소 공사	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7호의2서 식	매월 15일 매월 15일
4.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석 유비축의무자인 경우 : 석유 비축재고현황기록부	공사	별지 제29호서식	매월 15일
5. 기타 가. 석유정제업자·석유수출업 자·석유판매업자의 원가· 판매가격 등에 관한 자 료	산업자원부 장관 및 시· 도지사	—	자료 제출 요구 가 있는 날부 터 10일이내
나.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변동 보고	시·도지사	별지 제30호서식	차량 보유 대 수 의 변동이 있 은 날부터 30 일이내
다. 법 제7조·법 제8조제4항 또는 법 제9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 한 자의 보고	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·도지사	별지 제31호서식	승계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30일이내
라.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 : 공급자·판 매제품에 관한 사항	시·도지사	—	최초 판매개시 일 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 터 30일이내
마.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고 에 대한 검사소의 종합보 고	공사	—	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 내